교내연구비 지급에 관한 세칙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본 지침은 대신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 전임교원의 연구 증진을 위한 교내연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용어의 정의 및 구분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"교내연구비"라 함은 학술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지원되는 연구비를 말한다.
- 제3조(재원) 교내연구비는 다음의 재원으로 지급한다.
 - 1. 교비회계 연구비

제 2 장 교내연구비

- **제4조(지원목적)** 본교 전임교원의 연구역량을 고취하여 학문발전을 도모하고 자 교내연구비를 지원한다.
- 제5조(지원과제) "학술연구과제"라 함은 전임교원의 전공분야 또는 소속 학과와 관련된 학문이론 및 기술 등의 연구를 위한 과제를 말한다.
- 제6조(연구비 신청 및 선정) ① 연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내연구비 지원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7조(연구비 산정 및 지급) ① 연구비는 본교 예산범위 안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 - ② 연구비 지급을 받고자 하는 교원은 게재·출판된 연구실적물 또는 연주회(발표회,공연포함)자료를 첨부한 연구비지급신청서를 교무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.
 - ③ 연구비 신청은 연구실적물의 게재·출판일 또는 연주회(발표회,공연포
 - 함) 개최날짜를 기준으로하여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.

- 제8조(지급 대상) 본교 전임교원에 한하여 지급한다. (단, 학교정책상 총장이 허락할 경우 비전임교원 연구교수나 비전임교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.)
- 제9조(지급 제한) 교내연구비의 지급자격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- 1. 동일연구과제로 이중으로 연구비 지급받은 교원
- 2. 본교 교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.(단, 연구비 수급자의 사망등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)
- 3. 연구 및 게재기간 중 정년퇴직이 예상되는 교원
- 제10조 (연구계획의 변경) 연구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연구계획대로 연구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 교무처장에게 연구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11조(연구결과물 인정기준) 학술연구과제 연구결과물은 논문, 저역서, 예능계의 단독연주(주연주,독주회,독창회) 등을 인정할 수 있다.(단, 타 기관의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된 결과물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)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세칙은 2019년 3월 1일 부터 적용한다.

학술논문 연구비 신청서

소 녹(악과).	소	속(학과)	:
----------	---	-------	---

직 급:

성 명: (인)

학 술 지 명	
발 간 년 월 일	
호 수	
면 수	
논 문 명	

위와 같이 논문을 게재하였으므로 학술연구비를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대신대학교 학과장 (인)

독주·독창회 연구비 신청서

소	속(학과) :	
직	급 :	
성	명 :	(인)

독주·독창회 명	
공 연 일 시	
공 연 장 소	

위와 같이 개인 독주 • 독창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연구비를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대신대학교 학과장 (인)